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57
----------	-------

발의연월일 : 2026. 5. 22.

발 의 자 : 김선교 · 이현승 · 김예지
박준태 · 박충권 · 이종배
서천호 · 김민전 · 김은혜
김상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교육감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수사 및 소송과정에서 교사 개인의 업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교원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각급 학교의 지도·감독기관인 관할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소송지원을 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단의 상담 및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 및 지방변호사회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또한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 등).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의 지원

제21조제1항 중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로, “상담을”을 “상담 또는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을 구성할 때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사무소, 지방변호사회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 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 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 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 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영) ①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소송을 수
행하는 경우에-----
-----상담 또는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법
률지원단을 구성할 때 「변호
사법」에 따른 법률사무소, 지
방변호사회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
육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적 분
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수행하
는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